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40

발의연월일: 2020. 9. 25.

발 의 자:김경만·홍성국·강선우

신정훈 · 남인순 · 양기대

김민철 • 이개호 • 서영석

강병원 의원(10인)

제안이유

올해 2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13.4%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공 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중소제조업체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이에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최근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혜택을 연장하고자 함. 또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문화접대비 손급 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 수도권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한편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7 조의4).
- 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28조의3).
- 다.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60조, 제61조 및 제85조의8).
- 라.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136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 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3년 12 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제

-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 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 터 적용한다.
- 제4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6조(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대한 세액공제) 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	
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	
국인이 <u>2020년 12월 31일</u> 까지	<u>2023년 12월 31일</u>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	
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	
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	
(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	
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	
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 2. (생략)

②·③ (생 략)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 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 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 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20 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 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 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③ (생 략)

-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략)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 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
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2023
년 12월 31일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
행과 같음)
②

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 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 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 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 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 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 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 제

		-
		_
		_
		_
	- <u>2023년 1</u>	2
월 31일		-
		_
		-
		-
		-
		-
		-
		-
		-
		-
		-
		_
		-
		_
		-
		_
③ ~ ⑥ (현행과 같		7]
]61조(법인 본사를	丁 上ゼサミ	邑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 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 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 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0 <u>년 12월 31</u>일까지 양도하여 발 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 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 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 입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
<u>ㅇ</u>)
③
2023
<u>년</u> 12월 31일
인 12년 31년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 7 에 대한 과세특례) ① 2년 이 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 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 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 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 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 ③ (생 략)
-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 / 례) ①·② (생 략)
 - ③ 내국인이 <u>2020년 12월 31일</u>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에 대한 과세특례) ①
<u>2023년 12월</u>
<u>31일</u>
 1 0 (청체코 가야)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
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2023년 12월 31일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
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
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
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
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
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
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
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④·⑤ (생략) ④·⑤ (

④·⑤ (현행과 같음)